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회사명 : 한국투자신탁운용㈜

2. 조치일 : 2019. 7. 25.

3. 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6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리스크심사를 위한 파생상품 위험지표 측정방식 개선

파생상품펀드의 신규 설정시 손실확률 등을 측정하여 리스크 심사에 반영하도록 내규(「집합투자재산위험관리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특정 상품 유형(ELS)에만 적합한 측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다른 기초자산(금리, 원유 등)이 내재된 상품유형에 적용할 경우 왜곡된 결과값이 산출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상품 유형에 대해서는 내규에 반영되지 않은 측정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업무수행절차 및 내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방식 명문화 필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평가시스템을 통해 적정하게 산출하고 규정상 한도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파생상품 유형별, 기초자산별로 적용되는 세부적인 산출방법을 업무매뉴얼 또는 기타 규정 등에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의결권행사 업무수행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내규(「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의결권행사위원회 소집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사항은 대표이사 전결사항임에도, 2014.5.26.~2015.7.13. 기간 중 의결권행사위원회를 개최한 3건 중 2건을 전결기준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의사록 작성 관리도 미흡한 바, 의결권행사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이사회 개최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2018.6.4. 개최한 서면 이사회 결의와 관련하여 내규(「지배구조내부규정」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에 대한 의견동의 절차,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한 결과 통지 및 의사록 작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이사회 개최 관련 내부통제가 소홀한 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관련규정 숙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재산상 이익 제공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투자자 등 거래상대방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 목적·내용·일자 및 거래상대방 등의 내용을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 등 거래상대방이 동반하는 국외 업무출장을 실시하며 재산상이익 제공 대상 여부, 출장 목적에 부합한 비용 집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가 미흡한 바, 준법감시인 보고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이에 대한 사후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6) 계열회사와 정보교류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계열회사와 운용업무관련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내규(「내부통제규정」 등)에 따라 그에 관한 회의·통신 내용을 기록하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해상충 여부의 점검도 하지 않고 회의·통신 내용을 기록, 보관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한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